의 안 번 호

1577

[울산광역시 중구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안]

검 토 보 고 서

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. 9. 27.(금),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9. 27.(금)

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19. 10. 14.(월)

2. 제안이유

음악창작소 설치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, 음악창작소 위치 · 시설 · 기능(안 제1조 ~ 제4조)
- 나. 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, 위탁근거 마련(안 제5조)
- 다.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6조 ~ 제11조)
- 라. 운영시간, 사용료,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 ~ 제16조)

4. 근거법규

「지방자치법」제9조, 제136조 및 제139조

5. 검토의견

- 본 제정 조례안은 음악창작소 관리·운영 및 사용료 징수 등에 대 하여 규정한 것으로,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,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「지방자치법」 제139조에 따라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근 거 법 규

□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~ 4. 생략
 - 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

가. 생략

-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 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- 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